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7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용혜인·박홍배·한창민

정을호・조 국・윤종군

서미화 · 소병훈 · 김종민

문정복・이재관・허 영

정춘생 · 전종덕 · 이정헌

정혜경 • 유종오 • 주철현

임미애 • 백승아 의원

(20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2018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도입된 아동수당의 정책적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함.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이며,

양육비 부담은 8세 이상인 학령기로 접어들수록 커짐.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아동수당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함.

OECD 아동수당 지급국가 32개국 중 19개국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매월 약 30~40만 원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실효성 있는 초저출생 대책이 되려면 선진국과 유사하게 정책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함으로서, 아동수당법의 본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동수당을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나.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 다.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추가로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를 "1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4세 이상 아동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신청한 보호자"를 "신청한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수급아동 본인(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한 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위기청소년 혹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각 목에 해당되어 보호자 변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동이 보호자와 실질적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아동이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경제적 지원 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제2항 중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수급아동 본인(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한 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자"를 "수급아동 본인(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한 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	3
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	
수당을 사용하여야 <u>한다</u> .	<u>하고, 아동</u>
	이 아동수당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	지급액) ① <u>18세</u>
만의 아동에게 매월 <u>10만원</u> 을	<u>30</u> 만원
지급한다.	<u>.</u>
② ~ ④ (삭 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	⑤
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u>추가로 지급한다</u> .	<u>지급한다</u>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 <u>1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u>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
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삭 제)

②
<u>1</u> 8州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다만, 14세
· <u>역 근, 14세</u> 이상 아동은 본인이 직접 신청
<u>할 수 있다.</u>
<u> </u>

③ (생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 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 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 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 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 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 다.

- ② ~ ④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③ (연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u>신청한 아동 또는</u>
<u>보호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18세</u>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7

- ① ② (생 략)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 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 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⑥·⑦ (현행과 같음)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아동 본인(아동수당을 직
접 신청한 자) 또는 수급아동
의 보호자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u>1</u> 8세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 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당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수 있다.
1.·2.(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3. (생 략)

② (생략)

- ① (생 략)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 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 년 혹은 같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각 목에 해당되어 보호자 변 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 아동이 보호자와 실질적 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아동이 가정 내 갈등・ 학대 · 폭력 · 방임, 가정해 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 호자로부터 건강한 성장 과 발달을 위한 경제적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 ① (현행과 같음)

수급아동 본인(아동수당을 직 접 신청한 자) 또는 수급아동 의 보호자-----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 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생 략)
- 제15조(신고) ① 아동수당을 지 기 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 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1. ~ 4. (생 략)
 - ②・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 ①
<u>수급아동</u>
본인(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한
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u>.</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